

# 2022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

## 1 법무사관후보생 개요

### 1. 법무사관후보생이란?

- ❖ 군에서 직접 양성하기 어려운 법무장교에 복무할 사람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 중인 사람을 미리 후보생으로 선발·관리 한 후 법무장교로 임용하는 제도

※ 법무장교 충원 후 나머지 자원은 공익법무관으로 복무

### 2. 지원자격

- 병역판정검사, 현역병 입영, 사회복지무요원 소집 대상자
-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
  - \* 28세 이하자(94. 1. 1. 이후 출생자)로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인 사람
-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

제10조(결격사유 등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
**1의2.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**
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3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.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- 6의2.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

## 2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출 및 처리

### 1. 지원자(병역의무자) ⇒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에게 제출

○ 제출기간 : '22. 3. 11.(금) ~ 3. 31.(목)

○ 제출서류

- △ 현역·공중보건의사등복무지원서(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), 신원진술서(A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A),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용정보조회서
  - \* 기본증명서(상세) :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)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발급
  - \* 무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: 한국신용정보원(www.kcredit.or.kr.) (경로)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→ 내 신용정보열람(크레딧포유)
- ※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 누리집(병무뉴스 → 공지사항) 참고

선발인원 대비 지원인원 초과하는 경우 추후 '법학적성시험 성적 및 1학년 성적 추가 제출

○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

- △ 현역·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
  - 학력사항 : 소재지는 시·도 및 시·군·구 표기
  - 지원사항 : 법무사관후보생란에만 체크

- 서명 날인 및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에도 서명 필수
- △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A)
- 각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, 반드시 성명 기재, 서명날인
- ※ 지원서, 신원진술서, 동의서 작성 시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 누락없이 작성

## 2. 법학전문대학원의 장⇒이음(e-um)포탈 지원 접수(등록) 후 지원서류 우편 제출

### ① 병무청유관기관홈페이지(이음포탈, <http://e4c.mma.go.kr>) 지원 접수

- △ 접수기간 : '22. 3. 11.(금) ~ 3. 31.(목)
- △ 지원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고 이상 여부 재확인
- △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접수
  - 사전에 병무청 시스템 담당자 사항 등록되어야 로그인 가능(접수 기간 이전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확인 및 등록 요청)
- \* 접수기간 이전에 수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'병무행정 정보체계사용 (변경·취소)신청서' 접수, 유관기관 사용자로 등록되어야 접수 가능

#### ☞ 접수 경로

이음포탈(<http://e4c.mma.go.kr>) ⇒ 장교후보생지원자등록 ⇒ 법무사관후보생

### ② 문서 제출(온-나라 전자문서)

- △ 기 간 : '22. 3. 31.(목) 까지
- △ 붙임 서류 : 2022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(excel)

### ③ 지원서류 제출(우편 접수)

- △ 제출기간 : '22. 3. 11.(금) ~ 4. 5.(화)
- ※ 3.31.까지 이음포탈에 지원 접수(등록)된 인원내 한하여 지원서류 우편 제출(4.5.까지) 최종 인정
- △ 지원자 명단(성명 가나다 순 - 주민등록번호순) 순으로 개인별 '클립' 편철
- ※ 지원서류 개인별 순서
  - ① 현역·공중보건기사등복무지원서(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), ② 신원진술서(A)
  -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A) ④ 기본증명서(상세)
  - ⑤ 신용정보조회서

- \* 무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: 한국신용정보원(www.kcredit.or.kr.)  
(경로)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→ 내 신용정보열람(크레딧포유)

△ 우편 주소 【우편번호 35208】

-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(둔산동) 정부대전청사  
병무청 현역입영과 법무사관후보생 담당

**3**

**대한 안내사항**

○ 다음의 경우에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,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

△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20조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
-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
- 제한연령(30세)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
-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
- 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

△ 「군인사법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

○ 법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 : 수료 후 30세까지 자격 취득자

△ 국방부 역종분류 계획에 따라 현역 법무장교 선발·입영

△ 현역장교 선발자 이외의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입영